

2006. 7. 7. ~ 7. 14.
제170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재무과

목 차

□ 200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3
□ 200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7
○ 주민복지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9
○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지급		10
○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	..	11
○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현실화 추진		12
○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산정		13
○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		14
○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		15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16
○ 소규모 공유재산의 집단화 추진		17
○ 읍·면 청사의 효율적 관리		18
□ 특수시책		19
○ 상속재산 안내제 실시		21

200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사 업 명	사업내용	추진실적	진도 (%)
□ 지방세 부과징수	○ 목 표 : 51,780백만원 - 도세 : 24,986백만원 - 군세 : 26,794백만원	○ 징수실적 : 33,485백만원 - 도 세 : 17,701백만원 - 군 세 : 15,784백만원	65 71 59
□ 지방세징운 영	○ 인터넷 지로 납부제 확대실시	○ 확대세목 : 주민세,사업소세 자진신고분 ○ 실 적 : 175건/ 7백만원	
□ 법 인 세무조사	○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 기 간 : '06. 4 ~ 12 - 대 상 : 162개업체 - 목표액 : 400백만원 - 방 법 : 서면·현지조사	○ 세무조사 실적 - 서면조사서 접수 : 105개업체(57개업체 재요청) - 조사완료 : 30개업체 - 추정세액 : 64백만원	16
□ 개별주택 가격 산정	○ 개별 주택가격 조사 - 2006. 1. 1일 기준 - 2006. 6. 1일 기준	○ 개별주택가격조사 : 15,784호 ○ 특성조사및산정 : 15,784호 ○ 주민 의견수렴기간 운영 - 열람 및 의견 청취 : 4월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회 · 공시일 : 4. 30일, 9. 30일 · 대 상 : 15,784호, 201호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 접수기간 : 5. 1 ~ 5. 30 · 접수건수 : 78건 (상향조정22, 하향조정56) - 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3회	100

사 업 명	사업내용				추진실적				진도 (%)																																			
□ 체납액 관리	○ 체납액 징수현황 (단위 : 건, 백만원) <table>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체납액</th> <th colspan="2">징수액</th> <th colspan="2">미수납액</th> </tr> <tr> <th>건수</th> <th>금액</th> <th>건수</th> <th>금액</th> <th>건수</th> <th>금액</th> </tr> <tr> <td>계</td> <td>48,605</td> <td>5,692</td> <td>7,786</td> <td>1,185</td> <td>40,819</td> <td>4,507</td> </tr> <tr> <td>현년도</td> <td>4,750</td> <td>1,080</td> <td>2,658</td> <td>497</td> <td>2,092</td> <td>583</td> </tr> <tr> <td>과년도</td> <td>43,855</td> <td>4,612</td> <td>5,128</td> <td>688</td> <td>38,727</td> <td>3,924</td> </tr> </table>									구분	체납액		징수액		미수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8,605	5,692	7,786	1,185	40,819	4,507	현년도	4,750	1,080	2,658	497	2,092	583	과년도	43,855	4,612	5,128	688	38,727	3,924	21 46 15
	구분	체납액		징수액		미수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8,605	5,692	7,786	1,185	40,819	4,507																																					
	현년도	4,750	1,080	2,658	497	2,092	583																																					
	과년도	43,855	4,612	5,128	688	38,727	3,924																																					
	○ 채권확보 (단위 : 건, 백만원) <table> <tr> <th colspan="2">합 계</th> <th colspan="2">부동산압류</th> <th colspan="2">차량 압류</th> <th colspan="2">기타채권류</th> <th colspan="2">채 권 미확보</th> </tr> <tr> <th>건수</th> <th>금액</th> <th>건수</th> <th>금액</th> <th>건수</th> <th>금액</th> <th>건수</th> <th>금액</th> <th>건수</th> <th>금액</th> </tr> <tr> <td>40,819</td> <td>4,507</td> <td>19,858</td> <td>2,839</td> <td>11,981</td> <td>889</td> <td>2,108</td> <td>92</td> <td>6,872</td> <td>687</td> </tr> </table>									합 계		부동산압류		차량 압류		기타채권류		채 권 미확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0,819	4,507	19,858	2,839	11,981	889	2,108	92	6,872	687					
	합 계		부동산압류		차량 압류		기타채권류		채 권 미확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0,819	4,507	19,858	2,839	11,981	889	2,108	92	6,872	687																																		
※ 채권 미확보사유 : 10만원미만 소액 체납자																																												
○ 체납액 징수 활동 ○ 목표액 : 14,789백만원 ○ 유휴자금 관리 - 이자수입 목표액 : 1,400백만원 ○ 법원경매 교부청구 징수 - 131건 / 55백만원 징수 ○ 체납액특별징수팀 운영 - 130건 / 35백만원 징수 ○ 부 과 액 : 27,508백만원 ○ 징 수 액 : 23,090백만원 ○ 미 수 액 : 4,418백만원 ○ 예 금 액 : 86,695백만원 ○ 이자수입 : 860백만원									61																																			

사 업 명	사업내용	추진실적	진도 (%)												
□ 회계관리	○ 예 산 : 251,695백만원 - 일반 : 198,801백만원 - 특별 : 52,894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 공사 및 용역 집행	○ 집 행 액 : 66,796백만원 - 일 반 : 54,513백만원 - 특 별 : 12,283백만원	27												
		(단위 : 건/백만원)	27												
		<table><tr><td>구분</td><td>계</td><td>경쟁 입찰</td><td>수의 계약</td></tr><tr><td>공사</td><td>176건/ 7,804</td><td>106건 / 5,540</td><td>70건/ 2,264</td></tr><tr><td>용역</td><td>98건/ 1,772</td><td>46건/ 1,105</td><td>52건 667</td></tr></table>	구분	계	경쟁 입찰	수의 계약	공사	176건/ 7,804	106건 / 5,540	70건/ 2,264	용역	98건/ 1,772	46건/ 1,105	52건 667	23
		구분	계	경쟁 입찰	수의 계약										
공사	176건/ 7,804	106건 / 5,540	70건/ 2,264												
용역	98건/ 1,772	46건/ 1,105	52건 667												
□ 발생주의 복식회계	○ 복식부기 회계처리 ○ 2005년 통합 재무 보고서 작성	○ 검수 회계처리 : 8,637건 ○ 지출 회계처리 : 8,637건 ○ 기 간 : 5. 15. ~ 6. 30. ○ 내 용 :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 결산자 :복식회계담당(3명) 공인회계사(2명)													
□ 국·공유 재산관리	○ 국·공유재산 매각 - 국유재산 : 5필지 / 848m² - 도유재산 : 1필지 / 6,149m² - 군유재산 : 1필지 / 5,972m²	○ 매 각 수 입 : 134백만원 - 국유재산 : 58백만원 - 도유재산 : 32백만원 - 군유재산 : 44백만원 ※ 군수입 : 62백만원 (국유지 매각귀속대금 포함)													

사 업 명	사업내용		추진실적		진도 (%)
□ 영선관리	(단위 : 백만원)				100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추진 상황	
	군 및 읍면사무소 청사(부지)관리	10개소	6	- 부지 분할 완료 - 금왕농민회관증여 부분 소유권이전 - 재정경제부 소유에 대하여 무상양여신청 - 도로및구거용도폐지	
	서고 시설보강공사	475m²	23	'06. 6. 21 완료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민복지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목표액 : 416억원》

- 군 세 : 268억원 ('05년 260억원 대비 3% ↑)
- 세외수입 : 148억원 ('05년 75억원 대비 97% ↑)
- ※ '05년 335억원 대비 24% 증가

□ 추진 방침

- 법인체 세무조사 강화
-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재정역량 강화
-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차질 없는 재산세 부과 고지

□ 추진 계획

- 전산감사기법을 활용한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세원 발생 차단
 - 비과세 감면분 일제정비
 - 재산세 과세 및 감면코드의 적정여부 점검
- 과점주주 일제조사등 테마별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 체납 지방세 강력 징수로 조세정의 실현
 - 고질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실시
 - 상시 징수반 편성 운영 : 년 5회
 -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등록 등 강제징수 확행
 -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통한 체납세금 발생 예방

□ 기대 효과

- 자주재원 확충 및 세무행정의 투명성 확보
- 신바람 나는 음성건설을 위한 자주재원의 안정적 조달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 지급

- 세수확충 및 자진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한 성실 납세자를 추천하여
경품을 전달함으로써 건전한 자진납세풍토를 조성코자 함

□ 추진 방침

-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경품 추천제 실시로 자진납세
풍토 조성
- 납세의무자의 인식전환

□ 추진 계획

- 추 첨 일 : 2006. 10월경(재산세 납부 판독 완료후)
- 대 상 자 : 2006년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납기내 납부자중 개인.
- 경 품 명 : 음성사랑 상품권(5만원,3만원,2만원)
- 추점인원 : 1등 5명, 2등 10명, 3등 30명(45명)
- 추천기준 : 2006년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납기내 납부자중 추천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전산 무작위 추천
- 경품행사 계획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

□ 재 원 대 책

- 소요예산액 1,200천원 당초예산에 편성완료

□ 기 대 효 과

-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우대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 납기전 자진납부로 징수율 제고 및 지방세 체납액 사전 발생억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

- 법인에 대한 체계적, 효율적 세무조사를 통한 신고납세 풍토 조성
- 「신바람 나는 음성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정착

□ 추진 방침

- 지방세 포탈 및 세원·은닉 의혹 법인을 색출하여 직접 조사 실시
- 취약 분야에 대한 「테마별 기획조사」 지속적 추진
- 「서면조사 위주」 운영으로 기업부담경감 및 투명성 확보

□ 추진 계획

- 조사목표 : 162개 법인 / 400백만원
- 조사방법 : 서면조사 및 현지 방문조사 병행
- 중점 조사내용
 - 특수 취약분야에 대한 입체적(분기별, 테마별 주제선정) 조사
 - 신·증축 건물의 자산 증가
 - 비과세·감면 업체의 감면목적 적정사용 여부 등
- 하반기 추진계획
 - 징구된 서면조사서를 기준으로 현지 확인 조사 실시

□ 기대 효과

-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로 재정자립도 제고
- 신고납부 불성실 법인 사후조사 실시로 공평과세 구현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현실화 추진

- 현행 주민세 세율은 징세비용을 감안할때 세금으로서의 실효성이 미진
- 세율인상을 통해 교부세 배분시 인센티브 우선 부여등 세수확충 도모

□ 추진 방침

- 세율인상에 따른 조세저항 최소화를 위한 당위성의 적극 홍보
- 현행표준세율(5,000원)을 상한금액(10,000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추진

□ 추진 계획

- 세율인상(안) : 상한금액(10,000원)까지 인상
 - 2006년(2007년부터 적용) : 5,000원 → 8,000원
 - 2007년(2008년부터 적용) : 8,000원 → 10,000원
- 단계별 추진계획
 - 세율인상의 필요성 및 공감대 조성 : 2006. 9월
 - 의원 간담회등 의회 협조방안 강구 : 2006. 10월
 - 조례(안) 방침결정 및 입법예고 : 2006. 11월
 - 조례(안) 의회에 상정 및 공포 : 2006. 12월
 - 인상세율 시행일 : 2007. 8. 1일

□ 기대 효과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확보 및 지방세수 확충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산정

- '06년도 개별주택가격 업무에 따른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기준과표로서 활용될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산정
- 토지·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개별주택가격 결정시 의견수렴

□ 추진 방침

-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적극 수렴으로 가격 적정 결정
- 현지조사에 의한 주택특성을 조사하여 지방세 공평과세로 신뢰성 제고

□ 추진 계획

- | | |
|--------------------|------------------------|
| ○ 표준주택 조사결정 | 1,078호 |
| ○ 개별주택 현지조사 및 산정 | 15,784호 |
| - 주택특성조사 | 2006. 01. 02 ~ 02. 28. |
| -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기간 | 2006. 03. 01 ~ 03. 31. |
|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연 2회 |
| - 2006. 01. 01일 기준 | 2006. 04. 30. |
| - 2006. 06. 01일 기준 | 2006. 09. 30. |
| ○ 이의신청 기간 운영 | 연 2회 |
| - 2006. 01. 01일 기준 | 2006. 05. 01 ~ 05. 30. |
| - 2006. 06. 01일 기준 | 2006. 10. 01 ~ 10. 31. |

□ 기대 효과

-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산정으로 주택소유자의 재산가치 예측가능
-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현장 검증에 따른 세무행정의 신뢰성 확보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

- 경기침체 등에 따라 체납세금이 증가되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효율적·체계적인 체납처분으로 재정확충 도모
- 장기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제재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

□ 추진 방침

- 체납자에 대한 금융 재산 조회 강화
 - 신용정보기금,예금보험공사등과 정보 공유
-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기법 활용
 -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확정
 - 소득할주민세 체납액 채권 조기 확보 강화
- 체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유공공무원 포상시 체납세 징수 담당 공무원 우대

□ 추진 계획

-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선정 운영: 4회(분기별 1회)
- 금융거래 정보 조회 ⇒ 지방세 체납액 50만원 이상인자
- 채권압류재산의 신속한 공매 의뢰 ⇒ 1백만원 이상 체납자
- 3회 이상 고질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 무재산·징수불가능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확행

□ 기대 효과

- 지방재정확충 도모 자치 기반 마련
- 체계적 체납관리로 체납 일소 및 징수 효율성 확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

- 기존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로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조기에 제거 하므로 2007년 본격시행에 앞서 완벽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 방침

- 정확한 복식부기 회계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운영 내실화
- 복식부기 회계원리의 충분한 이해를 위한 교육강화
- 2005통합재무보고서의 발간으로 재정정보의 제공

□ 추진 계획

-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처리 지침 마련 ⇒ '06.7월경
-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회계원리 전문화 교육 ⇒ '06.8월경
- 2005통합재무보고서 발간 주민, 의원에게 정보제공 ⇒ '06.7월경

□ 기대 효과

-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조기정착으로 공무원의 경영마인드 향상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이행으로 계약업무에 대한 투명성 강조

□ 추진 방침

-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물품 계약 심의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주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 감독 지정운영

□ 추진 계획

- 조례 제정 운영
 - 조례명 : 음성군 조례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시 행 : 2006. 7월중
-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구성인원 :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추천자 등 15인 이내
 - 심의대상 : 30억이상 공사, 5억이상 물품·용역
- 주민참여 감독 지정 운영
 - 참여감독 : 마을 이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자
 - 대상공사(3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 공사)

□ 기대 효과

- 각종 계약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
- 회계분야의 정확하고 공정한 관리체계 구축

소규모 공유재산의 집단화 추진

- 공공목적의 활용도가 적은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신청 및 일제 조사 실시
- 연고자에게 매각하여 토지의 이용도 제고 및 군민경제 활동에 기여

□ 추진 방침

- 산재된 소규모 토지 매각 후 공유재산의 집단화 추진
- 일단의 토지 규모가 큰 면적은 매각보다는 보존을 원칙

□ 추진 계획

- 재산매각 일정
 - 매 각 신 청 : '06. 10월 ~ 06. 11월 (2개월)
 - 감정 및 매각 : '06. 12월 ~ '07. 4월 (5개월)
-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
 - 예정가격이 1건당 1천만원이하인 토지
 - 일단의 토지 면적이 700m²이하의 보존 부적합한 영세규모 토지 등

□ 기대 효과

- 공유재산의 집단화로 토지의 재산가치 및 활용도 제고
- 인접 사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함으로써 공유재산으로 인한 민원해소

읍·면 청사의 효율적 관리

- 군청사 및 읍면사무소 부지 중 국유지, 도유지를 매입하여 하나의 필지로 관리함으로써 업무효율 및 증축공사 시 문제점 해결,
-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고 주민 문화활동 및 건강의식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면청사 증축을 통하여 주민 문화활동과 생활체육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 방침

- 군청사 및 읍면사무소 부지 중 국유지, 도유지 매입(연차적)
- 주민자치센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주민 필요 공간 확보

□ 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사업량	사업기간	비고
군청사 및 읍면사무소 부지중 국유지,도유지 매입 추진	503	읍내리 825-25 외 14필지	'06. 9월 ~	공시지가 (연차추진)
소이면 청사 증축	800	600m ² (182평)	'06. 9월 ~'07. 7월	창고철거 후 증축

□ 기대 효과

- 하나의 필지로 관리함으로써 업무효율 및 증축공사 시 문제점 해결
- 주민에게 생활체육 시설 및 문화활동 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 주민의 자치의식 고취 및 주민의 참여확대를 통한 열린 행정 실현

특수시책

상속재산 안내제 실시

- 사망신고서를 접수때 민원인에게 상속재산 안내서를 발부하여
- 주민들이 상속이전등기의 법정기일 경과에 따른 취득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 추진 방침

-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법정기일 초과로 과태료 및 취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피할수 있도록 상속재산 안내 실시
 - 자동차등록이전(3개월 이내)지연 : 최고 50만원
 -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6개월 이내) 미이행 가산세 : 취득세액의 20%
- 사망자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 상속이전 등기 미 이행

□ 추진 계획

- 사망시 피상속인이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게 되는 바 매달 제세정행정을 통한 사망자 자료 추출
- 지방세 전산에 사망자료 입력 후 상속재산 취득 신고토록 안내
- 미신고납부시 취득세 과세자료로 활용

□ 기대효과

- 상속인의 상속절차 미 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등 재산상 손해 예방
- 상속재산에 대한 세원확보로 자주재원 확충 기여

(별첨 서식)

발급번호	상속재산안내서					처리기한 (즉시)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사망일	
	주소					
호주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비고	
재 산 내 역						
구분	소재지명/차량번호	용도/지목/차종	면적/배기량		비고	
1. 위와같이 상속재산을 안내하오니 <u>차량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u> 상속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상속을 하지 않으시면 <u>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u>를 부담하게 되고, <u>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0% 가산세</u>가 합산 부과되며,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호주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음성군 재무과(871-3152), 음성등기소(872-2025), 충주세무서 음성출장소(872-1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 7. 음 성 군 수						
※ 상속재산 안내서에 기재된 재산내역은 우리군의 재산세·자동차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내역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